

‘문학을 통해 보는 역사’와 ‘역사를 통해 보는 문학’ 사이의 거리

소현숙*

[서평] 이행미(2023), 『요동치는 가족: 가족법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의 상상력』, 파이돈, 312쪽

역사가로서 나는 늘 문학 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편지나 일기 외에 역사 사료는 대체로 사람들의 감정이나, 욕망, 의지 등을 잘 보여 주지 않으므로 역사가들은 사료의 흔적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도 결국 그 상상들을 글로 다 풀어내지 못한다. 근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으므로 역사책은 늘 딱딱하고 건조해지기 쉽다. 그에 비해 문학, 특히 소설은 인물 군상들의 섬세한 감정과 욕망, 갈등, 좌절 등이 이야기 속에 면면히 녹아 있으니 그야말로 도마 위에 진수성찬을 위한 식자재들이 요리사의 칼질을 기다리며 누워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역사가도 소설이 탐난다. 당대에 쓰인 소설을 사료로써 요리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나도 책을 쓰면서 소설을 인용하곤 했다. 하지만, 소설을 일반적인 사료와 똑같이 다뤄도 될까? 하는 조금은 꺼림직한 느낌이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 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료가 당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기 어려운 생산자의 편향과 입장을 담고 있어서 엄밀한 사료 비판이 요청되지만, 소설은 그야말로 작가의 창작이며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현실을 찌푸리게 그려 냈다고 하더라도 사료로 사용할 때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소설은 역사가에게는 다소 요리하기 어려운 식자재인데, 이행

*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조교수

미의 『요동치는 가족-가족법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의 상상력』은 그런 식자재를 가지고 근대 가족, 특히 가족법을 논하였다. 같은 주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로서 저자가 요리해 낸 음식 맛은 물론이고 그 칼질의 방식과 솜씨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서두에서 “식민지시기 가족법에 대한 문학적 응전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식민지시기 간행된 소설들을 통해 “가족을 규율하는 온갖 법이 당대 현실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사람들의 욕망과 감정에 얼마만큼 침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구조보다는 일상이, 법 그 자체보다는 그 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고 행동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오늘날의 연구 지형에서 보면, 이러한 질문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식민지 가족법의 변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2장에서 4장까지는 가족법의 변화가 소설이라는 텍스트 속에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주로 일부일처제, 이혼, 축첩 등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의 법적 권리와 관련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러한 가족법의 변화와 국가적 개입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족에 대한 상상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한다.

20명에 달하는 작가들이 쓴 50여 편의 소설을 분석하고 있는 이 책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설들도 꽤 언급되고 있어서 당시의 시대상을 상상하며 소설의 내용을 읽어나가는 재미를 선사한다. 또, 당대의 작가들이 당시의 가족법 변화와 그에 따른 현실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상을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 이를테면, 사생자 문제를 다룬 이태준의 『성모』(1935)에 대한 분석이 그렇다. 저자는 아이를 사생자로 민적이 올리고 자신의 성을 붙이며 아버지의 부정적 성격을 닮지 않도록 교육에 힘쓰는 소설 속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작가 이태준의 모성 재현을 새롭게 포착한다. 즉 이태준이 사생아를 ‘처녀가 난 아이’로 부르며 어머니의 부정과 타락을 강

조하는 당대의 사회적 인식을 거슬러 아버지의 부재를 메꾸는 모성이 아닌 부정확 아버지와 절연하고 모계의 혈통만을 고수함으로써 성스러워지는 모성을 그려 냈다는 것이다. 이 시기 사생자의 법적 구조와 그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다뤄진 바 있지만,¹ 그러한 비판적 인식 아래 새로운 가족의 모습에 대한 상상이 당대 지식인들에 의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당대의 작가들이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었던 점은 이 책이 새롭게 발견한 지점으로 기존 역사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책을 읽어 나가는 동안, 점차 역사가로서 여러 가지 질문에 휩싸이기도 했다. 아래에서는 그 질문들과 이와 관련된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소설은 현실의 반영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선 갖게 된 질문은 엘리트 작가들에 의해 그려진 소설 속의 현실이 당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책에서는 식민지시기 변화된 가족법의 현실이 소설에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거듭해서 다루고 있다. 아마도 문학 전공자인 저자가 왜 굳이 가족법을 다루는가를 설득하기 위해 소설의 내용 속에서 당대의 가족법과 관련된 변화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서술하고 이를 통해 문학과 가족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일까, 은연중에 소설 속에 그려진 내용이 당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1 홍양희(2013), 「“애비 없는” 자식, 그 ‘낙인’의 정치학」, 『아시아여성연구』 52(1); 홍양희(2014), 「‘법(法)’과 ‘혈(血)’의 모순적 이중주: 식민지시기 ‘사생아’제도의 실천, 그리고 균열들」, 『역사문제연구』 18.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역사적 현실과 소설적 재현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과도기 조선 사회에 나타난 이혼소송은 크게 두 유형으로 대별 된다. 아내의 무지를 이유로 이혼하려는 남성과 남편에게 종속된 삶을 거부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노라’와 같은 여성이 그것이다. 사회적으로 만연했던 이 두 현상은 당대 가장 빈번하게 다뤄졌던 문학적 제재였다.”라고 서술한 대목이 그러하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이혼 유형은 사실 조혼한 본처와 이혼하려는 엘리트 남성의 이혼, 그리고 가부장적 남편과 결별하고자 하는 신여성의 이혼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대 이혼소송이 이런 유형의 것으로만 수렴될 수 없음을 필자의 책 『이혼 법정에 선 조선 여성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당시 이혼소송은 엘리트 남성과 신여성뿐만 아니라 하층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었고 이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이유는 생활난과 학대, 폭력, 남편의 외도 등 다양했다.² 엘리트 남성의 이혼과 신여성의 이혼이 문학적 제재로 빈번하게 다뤄졌던 것은 이러한 유형의 이혼이 당대 작가들이 직면했던 자신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들에 의해 소설 속에 그려진 현실을 그들의 현실이 아닌 당대의 객관적 현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저자도 물론 이를 알고 있겠지만, 서술상에서 양자의 거리가 제대로 가시화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2. 소설의 작가와 가족법의 ‘타자’ 사이의 관계

저자는 서문에서 “가족법에 따라 배제된 타자들은 당대 문학 속에서 살아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 시기 작가들은 이들의 삶을 꺾인하게 그려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적 사유를 밀어붙여 새로운 삶의 가능성 혹은 다른 형태로 재배치된 가족의 상을 그린다. (중략)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2 소현숙(2017), 『이혼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역사비평사.

한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고투의 서사 속에 현행법과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담아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보면, 저자는 이 소설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광수, 염상섭 등 작가들이 당대의 역사적 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 자체의 엇갈림도 보인다. 예컨대, 이광수의 『재생』을 언급할 때는 첩으로 전락한 여학생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분석하지만, 김명순의 문학을 분석한 부분에서는 김명순의 문학에서는 첩의 문제가 여성의 실존적 문제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이광수의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여성으로서의 아픔, 그리고 저항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엘리트의 서발턴에 대한 재현에서의 권력관계의 문제는 익숙하게 다뤄져 온 주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저자는 작가들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현실을 꿰뚫히게 그려 내는 가운데 타자의 목소리를 대변한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목소리를 소설이라는 텍스트 속에서 찾고자 한다. 작가의 의도나 의식을 넘어선 현실에 대한 재현에 주목하고 거기서 타자의 목소리를 발견하려는 저자의 시도는 흥미롭지만,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소설의 작가와 가족법의 ‘타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직녀성』에서 이혼당한 구여성의 변화 과정을 그린 심훈이 사실은 현실에서 구여성 본처와 이혼한 장본인이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심훈은 왜 이혼을 원했던 남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혼을 당하는 구여성의 입장에서 소설을 썼는지, 심훈이 소설 속에 그린 구여성의 목소리는 과연 현실에서의 구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지 등 많은 질문이 떠오른다. 단순히 심훈이 구여성을 대변했다고 보는 것을 넘어서 양자의 관계에 대한 보다 복잡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3. 식민지 법의 성격

저자는 식민지시기 가족법이 도입됨으로써 개인의 자유나 계약에 근거한 근대법이 비로소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시기 도입된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조선의 ‘관습’에 의거하도록 하고 몇 가지 조항만을 일본 민법을 의용하였다. 물론 이때의 ‘관습’은 따옴표 친 관습으로 일본 사법관료에 의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포착된 관습임은 기존에 역사연구를 통해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지 가족법을 그 내용으로부터 살펴보면 개인의 자유가 지극히 제한된 법으로 개인의 자유나 계약에 근거한 근대법의 일반적 성격을 전제하고 논의하기 어렵다. 이는 특히 일본 본토에서 적용되었던 법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오카자키 마유미에 따르면, 일본에서 메이지 민법이 성립되는 과정은 개인의 권리와 호주의 절대적인 권한에 복종하는 가족원 사이의 법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근대법 원칙에 근거해 본다면 혼인이나 입양 등의 신분 행위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사람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물론 메이지 민법도 근대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관철하기 위해 신분 행위는 철저하게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호주의 가의 통솔을 규정하면서 가족원의 혼인이나 입양 등 호적 변동을 수반하는 신분 행위가 호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 의한 신분 행위 원칙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호주의 권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분 행위는 호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신분 행위의 효과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호주의 의사에 반한 가족원에 대한 징계의 권리로서 이적권(離籍權)과 복적 거절권을 호주에게 부여하였다. 이로써 개인의 권리와 호주의 권리는 교묘하게 타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관습에 의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원의 신분 행위는

호주의 동의를 절대적인 요건으로 삼아서 호주의 동의가 없는 신분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호주의 이적권이나 복적 거절권을 규정할 필요조차 없었다.³ 즉, 조선에서는 일본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었던 개인으로서 신분 행위를 할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의 호주권은 일본에서 시행된 호주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협의이혼을 당사자의 협의로 할 수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협의이혼에 관하여는 일본 민법을 의용하지 않았고 조선의 ‘관습’에 의거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결혼에서도 부모의 승낙이 없으면 법률상 정식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식민지 가족법을 근대법 일반의 문법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질문해야 하는 것은, 왜 남성 작가들이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자신들의 현실을 소설을 통해 그리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소설에서 재현된 현실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소설에서 재현되지 않는 현실과 그 재현되지 않음이 갖는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근대는 그 이전과 단절적인가?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책의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근대 이전과 이후를 단절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간통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간통죄와 같은 형법 조항도 이때 만들어졌다” 같이 간통죄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 서술한다거나, 이광수의 『무정』을 분석하면서 영채가 “아

3 오카자키 마유미(2013), 「식민지시기 조선 민사법의 호주권 기능: 메이지 민법의 「家」 제도와의 비교분석적 접근」, 『법사학연구』 47, pp. 59-70.

4 소현숙(2021), 「한국 「근대가족」의 식민주의적 기원과 남은 유산들: 가족법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84, p. 320.

버지의 법으로 대변되는 전통의 세계에서 국가와 사회가 정한 규약의 세계로 진입한 셈이다. …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관념적 도덕뿐 아니라 강력한 법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한다”와 같이 근대 이전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인 듯한 인상을 주는 문장들이 많다. 물론 법의 영향력이 근대 이후 더 커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대에 와서 법에 의한 통제가 새롭게 출현한 듯한 뉘앙스로 서술하는 것은 다소 곤란하다. 조선 시대에는 이혼에 관한 법 조항이 없었다는 서술도 당시 대명률의 이혼조항을 원용하고 있었으므로 절반만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또, 경찰서에 찾아가 이혼시켜달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던 당대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특별한 근거 제시 없이 서술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싶다. 1910년대 무단통치 하에서 경찰이 보여 준 폭력성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이 이미 많이 연구해 놓았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이 시기 민중들이 갑자기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볼 이유는 없다. 오히려 관에 고해서 문제를 해결해 온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이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근대와 그 이전 사회의 단절뿐만 아니라 연속성까지 시야에 넣으면서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사회를 구성하는 문학의 기능

서론에서 제시한 목표와 달리 이 책의 전반적인 책의 내용이 당대의 가족법적인 현실이 문학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 많이 할애되어 있다는 점은 아쉽다. 사실 이 책에서 논하고 있는 가족법의 현실은 이미 기존의 역사연구에서 다양한 역사 사료를 통해 충분히 언급되어 온 내용이다. 그 내용을 다시 소설의 서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를 반복하는 것으로 내용상 참신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궁금한 것은 저자가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당대 사람들이 그러한 법적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의 서술이 분량이나 분석 면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다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 저자는 “문학이 법에 의해 구축된 상징으로서의 가족을 전복하는 또 다른 상징체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문학이 “권리투쟁을 이끄는 법 감정을 촉발하여 더 많은 인권을 가시화하고 생성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학이 사회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한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설의 서사 분석을 넘어서 소설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새로운 분석이 요청될 것이다. 그런데 책에서 나오는 분석들은 대체로 소설의 서사에 대한 분석으로, 그러한 분석에서 도출된 소설적 상상력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독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추후의 연구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더 자세히 고찰되면 좋겠다.

역사 전공자로서 나는 이 책의 문학사적인 성취에 관해서는 적절히 논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질문과 의견은 순전히 역사학자로서 품었던 것들임을 밝혀둔다. 저자는 문학과 법 사이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사가로서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문학을 통해 보는 역사’와 ‘역사를 통해 보는 문학’ 사이의 거리를 다소간 느낄 수 있었다. 서로의 방법을 존중하면서 상생하는 소통을 앞으로도 함께해 나갔으면 한다.

참고문헌

- 소현숙(2021), 「한국 ‘근대가족’의 식민주의적 기원과 남은 유산들: 가족법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84.
- 소현숙(2017), 『이혼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역사비평사.
- 오카자키 마유미(2013), 「식민지시기 조선 민사법의 호주권 기능: 메이지 민법의 「家」 제도와의 비교분석적 접근」, 『법사학연구』 47.

- 홍양희(2014), 「'법(法)'과 '혈(血)'의 모순적 이중주: 식민지시기 '사생아'제도의 실천, 그리고 균열들」, 『역사문제연구』 18.
- 홍양희(2013), 「“애비 없는” 자식, 그 ‘낙인’의 정치학」, 『아시아여성연구』 52(1).